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30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0.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10.19.
- 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10.30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교통지도과장 한성구】

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 
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○ 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2조의2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 
31일까지로 함.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, 근거법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